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정1941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정1941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우승배(기소), 안화연(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5. 21. 23:28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사이트 'D'에 접속하여 제목 'E'라고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F을 상대로 '뭔데 시비 거냐? 50대 밖에 안 되는 새끼가... 니보다 훨씬 잘된다. 개새끼야 별거지 같은 새끼가 돈도 없는게.. 돈도 못 버는 개새끼야 망해 라 병신새끼야. 버러지 같은 새끼가 시비 거네.. 니 애미랑 개새끼야 돈도 없는 개소형 새끼가, 직접 보면 찍소리 못할 새끼가 인터넷이라고 시비 거네 병신새끼가 어딜 가나 너 같은 새끼꼭 있더라. 꼴에 성당다니냐? 예수 좇이나 빨아라 개새끼야 니 애미 예 수한테 강간당해라 사생아 새끼야 예수가 개같이 뒤졌듯이 니 애미랑 너도 똑같이 뒤 져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23:55경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제목 'G'에 대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H'를 상대로 '혼자 늙어 뒤질새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1. 23:55경에서 2015. 5. 22. 00:01경까지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T'라는 글에 대해 '더이상 못할 거임. 왜냐면 년 뒤질 거이기 때문에', '다음주 안에 뒤져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2. 00:02경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즐건 설이 드디어 다가오는~'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글에 대해 낙 이 없는데 뭐하러 사나?? 뒤져야지...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2. 00:02경 위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제목 'J'에 대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H'를 상대로 '니 반쪽도 없어져라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00:05경 위 제1항에 기재된 C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서 게시자를 클릭하면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내가 위치 알아내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자신 있으면 공개해봐라 가서 니마누라 목 따줄게. 니 마누라 내 좆 빨고 있다. 개새끼 야'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 23:43경부터 2015. 5. 22. 2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고소장
-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댓글 등 목록 첨부)
-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룰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판사 김대규